

# 「2025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분야 창업 도약기업을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9일

## I. 공모 개요

- **사업목적** : 전통문화분야 유망기업 창업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산업 중견 기업의 도약을 견인하고, 나아가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도모
- **공모명** : 2025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모기간** : 2025년 3월 19일(수)~4월 18일(금)
- **사업기간** : 7개월 ('25년 6~12월 예정)
  - ※ 지원기업(5개사) 중 최대 50%(3개사 이하)는 심사를 통해 차년도('26년) 연속 지원
- **선정규모** : 총 5개사
- **사업화 자금** : 기업당 50백만원 지원
  - ※ 창업기획자(AC)를 통한 교육·멘토링 등 별도 지원

구분	선정기업 수	지원되는 사업화 자금 (정부 지원금)	자부담 (필수)
창업 도약기업 (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5개사	50백만원	5백만원

※ 정부지원금의 10%(5백만원)에 해당되는 금액 자부담 매칭 필수

- **사업내용** : 전통문화 창업 도약기업의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자금(최대 2년간 1억원), 창업 프로그램
  - 인천공항 내 정책매장(관판면세점) 입점 연계 후속지원(중기부 협업) 등
- ※ 1차년도 지원기업 중 최대 50%(3개사 이하)는, 차년도 추가 지원 가능

## II.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가. 신청 자격

- 최초공고일 기준(2025.3.19.)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초과, 7년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대상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최초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초과, 7년 이하인 기업(신청가능 업력: 2018년 3월 20일~2022년 3월 19일)

#### ☞ 업력 확인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참고1]의 창업 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결정

####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 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으로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 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 여부 및 창업 업력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붙임1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나. 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 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참고 2] 참조

☞ 공고일 기준 틱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기업)

☞ 최초 공고일로부터 협약 체결기간까지 문체부 등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해당 사업의 협약 기간이 본 사업의 협약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주최한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 ※ [참고 3] 참조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전담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III. 지원 내용

#### 가. 사업화 지원

##### 1) 사업화 자금 지원(정부지원금)

○ 지원총액 : 5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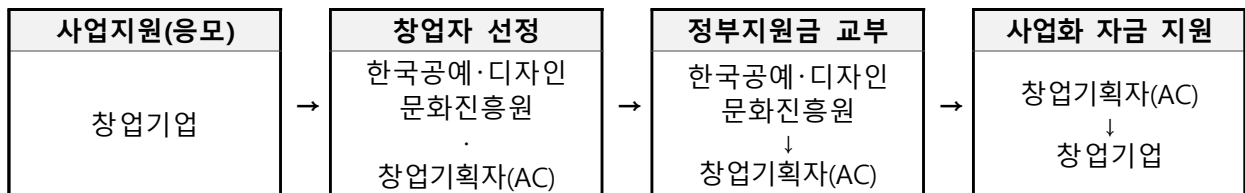
※ 정부지원금의 10%(5백만원)에 해당되는 금액 자부담 매칭 필수

○ 사용용도 :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 활동, 지적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마케팅, 판로개척, 홍보 등

※ 유형자산 취득 불가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으로 사용 불가

○ 지원 체계



○ 사업화 자금 구성

기업당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기업당 자부담금	기업당 총 사업화 자금 (국가지원금+자부담금)
50백만원	5백만원	55백만원

## 2) 창업 도약기업 특화 지원

### ○ 도약기업 중점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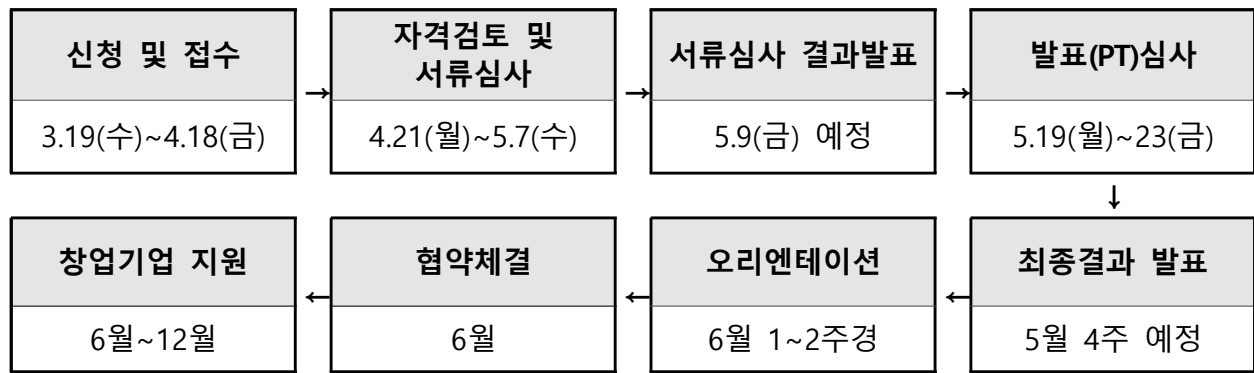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2025)	2차년도(2026)
지원기업수	2025년 5개사	(최대)1차년도 지원기업의 50%
사업화 자금 지원 (국가 지원금)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50백만원 추가 지원
보육프로그램 운영 방향	유통판로 개척 및 후속투자 유치 중심	글로벌 시장 진출 중심

- 사업화 지원 및 관리 : 창업 지원금 활용, 수익모델 보완, 기술 및 제품 개발,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
  - ※ 기업별로 차별화된 포인트와 강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
- 교육·멘토링 : 창업기획자(AC)를 통한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기업의 특징, 요구사항을 고려한 도약기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 프로모션·홍보 지원 : 유통·투자상담회 등 프로모션 지원 및 국내외 매체, 협력기관 등 홍보채널 활용 홍보
- 면세점 입점 연계 지원 : 중기부 협업을 통해 인천공항 내 정책매장 (판판면세점) 입점 연계 후속지원(2026년 상반기 예정)
- 투자유치 지원 :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데모데이 개최 및 우수참여기업 창업기획자(AC) 직접투자
- 시상 : 우수기업 1개사 이상 선정 및 시상(진흥원 원장상 등)
- 사후 관리 : 후속 투자유치, 글로벌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해외 전시 참가 등 기관 간 상호협력 중점 지원
  - ※ 기업 특화 지원은 해당 창업기획자(AC)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IV.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년 3월 19일(수)~4월 18일(금)
- 신청방법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공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공모 홈페이지 주소 : [kcdf.kr/businessapplication](http://kcdf.kr/businessapplication)
  - ※ 우편/방문 접수 불가, 접수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 세부일정(안)



※ 상기 일정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서류심사, 발표(PT)심사 및 합격자 발표 등 세부 사항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kcdf.or.kr)에 공지 예정
- \* 세부 일정은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

세부 내용	비고
·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1
·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 신청 관련 증빙자료 - 기창업(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증빙서류 1부 - 서류심사 가점 사항 증빙서류 1부	붙임2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붙임3
· 자부담금 지급 약속서 1부	붙임4

-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임의 양식의 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붙임2에 포함하여 제출
-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

## V. 선정 및 지원 절차

### 가.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 자격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창업 아이템의 개선 과제 및 방향, 팀 구성, 최근 3년 이내 매출액 실적 등 평가

- ※ 서류심사 가점 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4] 참조)
- ※ 발표(PT)심사 대상은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목표 1.5~3배수 내외에서 선정
- ※ 평가 과정 후에도 신청 자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처리함

## 나. 발표(PT)심사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사업모델(BM),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발표 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 및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사업아이템의 매출액 등의 성과, 글로벌시장 진출 계획,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등 종합 평가
-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표(PT)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으로 하며, 심사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대리자가 발표 시 신청자의 부득이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부득이한 경우(예): 질병, 해외체류, 천재지변, 사고 등)
- ※ 최종 선정 예정 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서 및 발표 자료 내용을 현장 확인함

## 다. 결과발표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 인원 2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라. 협약체결

- 대상기업(최종선정자)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약체결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라. 검토 결과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 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 가.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정한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수행 불가능
- 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 VI. 유의사항

### 가. 신청 및 평가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표(PT)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으로 하며, 심사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대리자가 발표 시 신청자의 부득이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부득이한 경우(예): 질병, 해외체류, 천재지변, 사고 등)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 나. 선정 후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협약 기간 내 창업 교육, 사업화 코칭, 네트워킹 참여 등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사업비는 '이나라 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 도약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의 협약 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VII. 문의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기반팀 (02-398-1693)

### 【참고】

1. 창업 여부 및 창업 업력 기준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3. 지원 제외 대상 유사 사업 예시
4. 서류심사 가점 사항
5. 정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붙임】**

1.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 신청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4. 자부담금 지급 약속서 1부

**참고 1**

**창업 여부 및 창업 업력 기준(공고일 기준)**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하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하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3년 초과, 7년 이하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와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의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2****지원 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

**참고3**

**지원 제외 대상 유사 사업 예시**

연 번	사 업 명
1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	K-스타트업 센터
3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
4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5	관광글로벌챌린지프로그램
6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7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8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9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10	글로벌액셀러레이팅
11	글로벌창업사관학교
12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13	농식품 기술평가지원
14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15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6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DATA-Stars)
17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 : 세움지원(초기)
18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19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20	사내벤처육성프로그램
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2	상생서포터즈 청년 창업 프로그램
23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24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25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26	스포츠 재창업지원사업
27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28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29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31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32	예술기업 성장 지원
33	장애인 창업 육성
34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35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36	재도전성공패키지
37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38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39	창업도약패키지
40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41	창업중심대학
42	창조경제혁신센터
43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사업(초기창업)
44	초기창업패키지
45	콘텐츠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대기업-스타트업)
46	콘텐츠 창업도약 프로그램
47	콘텐츠 창업 재도전 지원
48	콘텐츠 초기 창업 지원
49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50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 위 사업 외 주관사가 판단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사업

- 위 사업에 기선정(협약 후 포기자 포함) 되어 본 사업 최초 공고일(2025.3.19.) 부터 본 사업 협약종료일(2025.12.31.)까지 기간 중 지원 기간이 하루라도 겹치는 자(기업)는 본 사업 참여 불가

※ 유사사업의 사업기간이 본사업의 협약기간과 겹치지 않을 시 중복 수혜 가능

**참고4**

**서류심사 가점 사항**

구분	세부 내용	증빙서류	가점
1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등록원부	0.5점
2	○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증빙서류	0.5점
3	○ 만 29세 이하의 대표자	신분증	0.5점
4	○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수상 1건당) (최근 2년 이내('22~현재) 경진대회 수상자, [참고5])	수상 관련 증빙서류	0.5점
5	○ 최근 2년 이내('22~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교육 이수자 (총 30시간 이상의 기술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온라인 교육은 제외))	수료증	0.5점
6	○ 사회적 기업	인증서	1.0점
7	○ 근로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증빙서류	1.0점
8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0점
9	○ 최근 1년 이내 100백만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	투자확인서, 투자계약서	1.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참고5**

**정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부처	경진대회명	인정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수상자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 : 시작지원	수상자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이상 입상자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행정안전부	법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수상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입선 이상 수상자
	디스플레이 챌린지 공모전	수상자
환경부	환경창업대전	수상자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수상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수상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수상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산림청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금융위원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